

WTO 체제내에서 우리나라 통상정책의 과제

-쌀산업을 중심으로-
Korean Trade Policy in WTO System
-Case for Rice Industry-

김은영(Un-Young Kim)

한국대학교 무역학통상학과 교수

목 차

- | | |
|--------------------|----------|
| I. 서 론 | V. 결 론 |
| II. 쌀산업의 현황과 국제환경 | 참고문헌 |
| III. 국제기구 및 미국의 논의 | Abstract |
| IV.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 |

Abstract

Korean rice industry is facing new challenge. Nowadays, rice price is ever rising since last year. Difference between domestic price and international price is also ever decreasing and korean rice has chance to win over foreign rice because of better quality and low price. Now is the time to discuss on tariffication of rice import. Even if Korea follows modality of DDA, Korean rice market does not give in to foreign rice. On the other hand, Korean policy makers should make efforts to find way for grain sovereignty.

Key Words : Rice industry, Tariffication, Grain sovereignty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2008년 들어 국제 쌀가격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7월 15일 현재 우리가 소비하는 미국산 중립종 쌀이 톤당 \$1175 달러로 3년전보다 400%의 가격폭등을 기록했다. 아직까지 쌀만큼은 국제가격과 차이가 많이 나고 자급하고 있는 형편이라지만 이도 믿을 바가 못된다.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으로 본다면 조만간 국내에도 쌀파동이 몰아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본고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쌀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문제가 되는 사안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 보면 박동규(2007)는 중장기적으로 쌀수급이 안정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당시는 비교적 안정적인 국제쌀가격을 가정으로 공급과잉이 될 경우를 염두에 둔 연구를 수행하여 2017년 국내쌀가격을 15만 7천원, 관세화이후 2017년 수입쌀가격을 18만원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¹⁾ 사정이 크게 바뀌었고 쌀의 역할도 단순한 주식에서 밀과 그밖의 잡곡을 대체하는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 경우 예상되는 쌀수요증가는 쌀가격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 국제가격은 현재 계속 오르고 있어 관세화 논의를 무색케 하고 있다. 김명환(2007)은 관세화유예를 계속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례를 분석했는데 WTO에서 선진국 혹은 개도국으로 분류되는 경우에 일관적으로 톤당 620달러 이상인 국제시세가 형성되면 쌀수입에 대한 부담이 적어 조기관세화의 이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의 상황은 국제가격이 현저하게 낮은 관계로 우리나라의 수입개방논의는 득보다 실이 크고 오히려 공급과잉으로 국내시장을 교란시킬 우려까지 제기되었었다. 본고는 그러한 우려를 뒤로 하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시장개방에의 득실을 저울질해 보며 개방이후의 정책을 제시하고자 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소비하는 중·단립종 쌀시장은 국제적으로 거래량이 적어 국제가격은 결코 안정적이라 할 수 없다. 최근 국제 중·단립종 시장에서 칼로스 1등급 기준 가격은 올해 2월 톤당 평균 600달러 선에서 거래되던 것이 7월 들어 톤당 1000달러를 넘어 거래되고 있어 가격이 급상승하는 추세로 지난해 4월에 톤당 550달러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두배 가까이 오른 것이다. 이는 평균적으로 년간 250~280만 톤이 거래되는 국제 중·단립종 쌀 시장에서 주요 수출국 중의 하나인 호주가 가뭄으로 수출을 줄였고, 30%와, 20%에 해당하는 이집트와 중국이 수출을 중단하거나 통제하는 상황이 발생한 때문이다. 향후 국제 시장에서 장립종 가격이 현재와 같이 지속적인 급등세를 유지한다면 중·단립종 소비국가에서 수입하던 장립종이 중·단립종으로 대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옥수수와 밀가격의 폭등으로 쌀과 옥수수, 밀사이의 가격차이가 줄어들어 역시 이들을 대체할 가능성도 크므로 전반적인 쌀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중·단립종 쌀의 국내외 가격차는 100% 미만이 될 가능성도 크

1) 2008년 5월 현재, 캘리포니아 중립종 쌀가격은 톤당 926달러, 태국산 장립종 쌀은 톤당 973달러이다. 「세계곡물가격동향」, 농촌경제연구원, 2008.5.

다. 이 경우 조기관세화 논의는 자연스럽게 제기될 것이며 이를 대비한 각종 대책의 정비가 시급하다.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쌀산업의 국제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정책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다른 곡물과는 달리 자급자족하고 있는 쌀의 경우, 아무런 대책없이 수수방관하고 있기가 쉽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7월까지의 논의에서는 국가 간 협상내용에 합의한다는 가정하에 세부원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행계획서를 내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협상은 중단된 상황이지만 재개된다면 본고의 논의가 다시 수면에 떠오를 것이 확실하다. 오히려 이런 기회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탐진해보고 상황에 따라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생겨 다행스러운 면도 있다. 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식량안보시대의 도래를 예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쌀시장은 2014년까지 수입개방을 유예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일본의 경우와 같이 수입개방으로 방향을 돌릴 수도 있다. 과거 수입개방에 대한 우려가 주된 분위기였지만 본고에서는 시나리오에 따라 우리나라의 득실을 따져보고 있다. 시나리오는 관세인하를 골자로 DDA 협상안의 범위에서 불리한 경우와 유리한 경우를 순서대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다. 보조금도 사용하고 있거나 향후 사용가능한 보조금을 따져 분석해 보았다. 한편, 시장개방으로 있을 지 모르는 식량위기에 대비하여 각종 정책들을 정리해 제시해 보았다.

II. 쌀산업의 현황과 국제환경

우리나라 국민들은 영양공급량중 29%를 쌀을 통해 얻고 있는 바 쌀은 우리나라 국민의 주곡이다. 2008년 현재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28%이며 거의 100% 자급자족하는 쌀을 제외할 경우 곡물자급률은 4.6%에 불과하다. 재배면적은 955,5000 ha로 임야를 제외한 국토면적의 27%를 차지하고 있어 쌀 농업은 막대한 다원적 기능²⁾을 제공한다. 2006년 쌀 생산액에서 중간 투입을 제외한 부가가치는 7조원 대로 2005년 추곡수매제 폐지 이후 국내총생산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³⁾했다. 그러나 수출산업과 비교해 볼 때 자동차수출과 쌀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비슷하다.⁴⁾ 농업에서 쌀의 위치를 보면 우리나라 농가중 73%는 쌀농사를 짓고 있고 농경지 면적에서 쌀 재배면적의 비중도 가장 높다. 2005년부터 쌀소득보전작불제⁵⁾가 도입되면서 2007년 쌀 관련 예산 중 소득안정 예산은 16,672억원이었

2) 논의 환경보전, 홍수조절 등 다원적 가치는 쌀 생산액의 2배가 넘는 연간 19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3) GDP 중 쌀산업의 비중은 1985년 4.1%에서 2006년 0.8%로 감소했다.

4) 박미옥, “무역의존도의 올바른 이해”, 동협경제연구소, 2007.1.

5) 직접지불제는 농업분야 보조방식 가운데 하나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농산물 시장가격을 높여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가격지지 정책과는 달리 재정에 따라 농가에 직접 소득보조를 해주는 제도이다.

으나 2008년 들어 쌀값안정으로 예산은 크게 줄었다. 그동안 2004년까지는 추곡수매제도를 통해 쌀 소득을 보전해 왔으나 2005년 추곡수매제를 폐지하는 대신 쌀소득보전직불제를 도입하여 쌀 소득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⁶⁾ 최근 국제곡물가는 상상이상으로 폭등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승일로에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⁷⁾다. 장립종 쌀의 경우도 올해 들어 100% 넘게 국제가격이 올랐으며 우리가 소비하는 중단립종 역시 10% 가까이 가격이 상승했고 계속 오르는 추세다. 우리나라를 기상재해로 대략 10년에 한번 정도 큰 흥년이 발생하고 있다. 과거 80년대 초반에 연간 쌀생산량의 절반까지도 수입한 경험도 있다. 이때 물량이 부족한 나머지 일부는 우리가 평소에 소비하지 않는 장립종을 수입한 경험이 있어 물량부족에 대한 경종을 울린 바 있다⁸⁾. 쌀은 특성상 생산, 소비, 수출이 소수 국가에 편중되어 있어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기존 GATT 규정에서는 수출제한의 예외로 안보예외⁹⁾를 두고 있는데 주로 전략물자¹⁰⁾에 대한 수출통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농업협정에서는 제12조 1항(a)에서 회원국이 식량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당한 고려를 할 경우 수출금지나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식량아보란 자국민의 생존유지를 위한 적정규모의 식량안보를 의미하고 나아가 국가안보와도 연결되는 개념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식량자급률이 낮은 나라에게는 식량수출국으로부터 정치적, 경제적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국가의 주권행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즉, 식량주권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최근의 동향을 보면 잇달아 쌀 수출국들이 수출중단을 선언하고 나서 국제가격의 폭등을 자초하고 있다. 이 때문에 WTO에서 식량안보 Box¹¹⁾를 만들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서 주요 수출국인 태국은 지난 5월 쌀수출기구를 만들어 쌀을 석유처럼 독과점 생산, 판매하는 국제기구를 제안한 바 있다. 이 경우 생산량 대비 교역량의 비중이 매우 낮은 중단립종 쌀은 소수의 수출국 정책과 상황에 따라 국제가격이 출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¹²⁾ 전문가들은 최근 쌀 가격이 폭등한 이유로 쌀 수출국에서 수출물량 제한조치를 취하는 한편 전반적으로 녹색 혁명을 등에 업은 산업화에의 의지에 따른 물량부족을 국제쌀값의 이상폭등 원인으로 보고 있다. 태국, 베트남, 인도 등 세계 최대 쌀 생산국들이 곡물 가격 급등에 따른 자국 식량 안보와 가격 안정 이

6) 2007년산 쌀의 경우 ha당 99만9천원의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지급했으나 2008년도는 ha당 70만원 규모이며 2008년 직불 예산 규모는 쌀값안정에 따른 쌀변동직불금의 감소로 '07년 보다 2,427억원 감소한 1조 9,039억원이다.

7) 이대섭, “쌀산업과 식량안보문제”, KREI 논단, 2008. 4.14.

8) 쌀 공급량이 30%가 줄어들면 46천원하는 쌀값이 최대 113천원(146%)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쌀 공급량 30% 감소시 가구당 쌀 지출액이 43.5~146.4% 증가하여 식료품비는 약 2~6% 증가한다는 것이다. 특히 소득에서 식료품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에 타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섭의 1인, 식량위기와 쌀자급의 의의, 농업경제연구소, 2008. 5.

9) 1994년 GATT 제21조

10) 무기류와 무기류의 제조, 개발에 이용 가능한 군사용 및 산업용으로 모두 사용이 가능한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을 모두 일컫는 개념이다.

11) 최승환, “WTO는 식량수출통제를 허용하는가?”, GS&J Institute, 2008.7. pp.12.

기후변화와 질병에 취약하고 경작요소가 한정된 농업활동의 특성상 일정수준의 국내생산력 유지가 식량안보의 핵심 요소임을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농업협정 제20조가 비교역적 관심사항을 고려하여 농업협상을 개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채택된 각료선언에서 WTO 회원국들이 식량안보와 환경보호를 포함한 비교역적 관심사항을 DDA 농업협상에 반영하기로 합의하였다.

12) 1980년 우리나라의 흥작으로 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1981년도 국제가격이 전년대비 38.5% 상승한 바 있고, 1993년 냉해로 일본의 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1994년도 국제가격이 전년대비 26.7% 상승했다.

유 등을 내세워 쌀 수출량을 크게 줄이고 있고 상황에 따라 수출을 늘이기도 하겠으나 언제든지 수출 중단의 위험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현재 세계 인구는 증가일로에 있고 각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쌀 소비량이 늘어나지만 급격한 도시화로 노동력, 경작지, 관개용수가 부족해진 데다 지구온난화 문제가 커지면서 공급난으로 쌀값폭등이 야기되고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국제쌀가격과 국내쌀가격과의 격차는 나날이 줄고 있다.

〈표 1〉 주요 쌀수출국가의 수출통제현황

쌀수출국	통제유형	비고
인도	2007.10. 쌀수출중단	세계 2위 쌀수출국
라이베리아	2008.4. 쌀수출중단	
중국	2008.1. 쌀, 옥수수, 밀가루 수출관세 인상	
캄보디아	2008.3. 쌀수출중단	
이집트	2008.4. 쌀수출중단	
베트남	2008.4. 쌀수출량을 350만톤 으로 제한	
브라질	2008.4. 쌀수출중단	
인도네시아	2008.4. 쌀수출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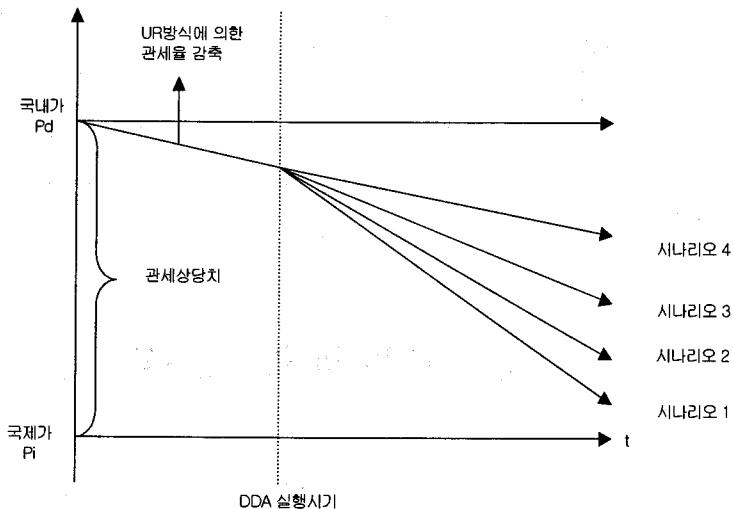
자료: 한겨례, 2008.6.22

III. 국제기구 및 미국의 논의

WTO 주관 하에 2008년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DDA협상이나, 개별 관심국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는 FTA협정은 결국 농산물시장개방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기존의 UR협상의 내용을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는 DDA협상은 다소 차이가 있다. 실질적인 사안에 대한 세부원칙(모델리티)을 정해 이에 따른 각국의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모델리티는 각국이 개방의 정도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결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1. UR 협상내용을 토대로 한 DDA 협상

UR협상은 처음으로 농산물을 협정내용으로 한 협상으로 주로 농산물 수출국의 의견을 들어 수입국의 무역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시장접근을 확대하고자 했다. WTO출범이후 첫 번째 협상인 DDA협상은 관세감축분야와 시장접근물량의 확대, 그리고 보조금의 자의적 선택등에 관건이 되고 있다. 또한 관세감축분야는 UR협상에서 적용한 방식¹³⁾을 선호하는 입장과 국가간 품목간의 관세격차를 줄이자는 관세조화방식¹⁴⁾을 선호하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 있었으나 국가간 품목별로 자국에 유리한 형태의 관세감축방식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되어 현재의 UR방식보다는 신축적으로 운영이 되나 경우에 따라 매년 큰 폭의 관세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될 수도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개도국지위를 획득하는가에 따라서 시장개방이 늦춰질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몇몇의 특별품목을 제외하고는 대대적인 시장개방이 이루어 질 전망이다. 아래 그림은 필자가 11쪽 시나리오에 따른 관세감축률의 차이를 예시해 본 것이다.



<그림 1> UR방식과 DDA방식 의장초안 간의 관세감축률 차이의 예

- 13) UR방식은 단순평균방식으로 선진국은 6년간 평균 36%, 최소 15%를, 그리고 개도국은 10년간 평균 24% 최소 10%를 감축하는 방식으로서, 한국, 일본, EU, 스위스, 노르웨이 등 소 NTC그룹이 선호하고 있다.
- 14) UR협상결과 나타난 매우 높은 수준의 관세(Tariff Peak)로 인해 교역확대가 크게 저해 받고 있으므로 관세감축율을 보다 실질적으로 감축하는 방향으로 높은 관세율은 대폭 감축하고 낮은 관세율은 상대적으로 적게 감축하자는 입장으로서 미국과 케언즈그룹 등 농산물 수출국들이 선호하고 있다.

2. 보조금 감축

WTO에서 분류하고 있는 국내보조장치는 허용보조(Green Box), 생산제한하의 직접지불(Blue Box), 그리고 감축대상보조(Amber Box)등과 최소허용보조(De Minimis)등인데 이를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나누어서 수정초안은 개정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허용보조의 경우 선진국은 현행의 틀을 유지하되, 보조금 지급요건을 강화하며 개도국은 보조금 지급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규칙을 개정하며 식량안보 등 목적의 새로운 허용보조를 추가할 것을 검토하였다.

〈표 2〉 UR 협정문에 따른 국내보조의 분류

보조형태	분류	관련규정	관련정책	비고
직접보조	허용대상: 협의의 직접지불	부속서2의 5~13항: Green Box	-재해보상지원 -이탈농지원 -조건불리지역지원 -환경농업지원등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직접지불조건을 만족시켜야 함
		6조 5항: Blue Box	-생산제한하의 직접지불	EU의 농업지불제
		6조 2항	-개도국의 농업투자	농업 및 농촌개발투자
간접보조	감축대상	6조 1항:Amber Box	-투입재보조등 일반적 소득보조	최소 허용 보조(de-minimis) 비율내에서의 보조는 허용(6조 4항)
	허용대상	6조 1항	-가격지지등	
	허용대상	부속서 2의 2~3항	-연구, 지도등 일반서비스 정책 -식량안보비축제도	

자료: 성진근, “한국농업최고경영자과정 교육의 발전과제”, 강원대학교 농촌사회교육원, 2004. 8. pp.9.

DDA 협상결과에 따른 모델리티¹⁵⁾를 보면 일반품목에 대한 농산물 관세는 관세구간에 따라 선진국 일 겨우 50~73%, 개도국일 경우 33.3~49% 감축해야 한다. 쌀의 경우 개방할 경우에 제4구간에 속하게 되어 양허관세가 130%를 초과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개도국이 되면 최소한 44~49% 관세를 감축시켜야 하고 선진국으로 분류되면 66~73% 감축해야 한다.

15) 현재 계속 협상중인 관계로 세부내용은 자주 변경되고 있다. 현재 내용은 세부원칙 3차 수정안에 따른 것이다.

〈표 3〉 관세구간 및 관세감축률

	선진국		개도국	
	관세구간	감축률(%)	관세구간	감축률(%)
제1구간	0~20% 이하	50	0~30% 이하	33
제2구간	20~50% 이하	57	30~80% 이하	38
제3구간	50~75% 이하	64	80~130% 이하	43
제4구간	75% 초과	66~73	130% 초과	44~49

자료: 농림수산부, 농업협상추진동향, 2008.6.

민감품목으로 지정할 경우 관세 감축률은 낮으나 무관세쿼터(TRQ)를 늘여야 한다. 모델리티에 따르면 선진국은 총세번의 4~6%를 민감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고 개도국은 5.3%~8%를 민감품목으로 지정 가능하다. 민감품목이 되면 관세감축은 일반품목 감축률의 1/3, 1/2, 2/3를 적용할 수 있다. 관세감축에서 발생한 이익은 무관세쿼터로 돌려야 하며 아래 표4와 같이 설정한다.

〈표 4〉 민감품목의 TRQ 설정

	민간품목의 관세감축률(%)		
	일반감축률의 1/3 적용시	일반감축률의 1/2 적용시	일반감축률의 2/3 적용시
선진국	국내소비량의 4%~6%	국내소비량의 3.5%~5.5%	국내소비량의 3%~5%
개도국	선진국의 2/3 수준		
	국내소비량의 2.7%~4%	국내소비량의 2.3%~3.7%	국내소비량의 2%~3.3%

자료; 서진교, DDA 농업협상, "우리농업의 미래설계도를 요구하고 있다". GS&J Institute, 2008. 7 pp.3

특별품목¹⁶⁾은 TRQ 없이 관세를 평균적으로 15%(최소 12%에서 최대20%) 감축하게 되어 있다. 중요한 사실은 이중 일부에 대해 관세감축의무가 면제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다. 쌀시장의 경우, 특별품목으로 지정될 수 있는가가 개방여부를 결정짓는 변수가 될 수 있다. 개도국으로 인정받고 쌀이 특별

16) 개도국 특별품목은 개도국의 식량안보, 생계유지, 농촌개발에 기초하여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기로 합의한 품목으로 협상기간 내내 그 수와 혜택을 놓고 G33(한국포함 주요농산물 수입국가)과 미국등 선진국(농산물 수출개도국포함)이 대립을 보여온 품목이다.

품목으로 지정될 경우 관세화하더라도 관세를 감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는 관세화가 현재의 관세화 유예 + MMA(최소시장접근물량)¹⁷⁾의 경우보다 훨씬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이 된다.

〈표 5〉 개도국 특별품목의 수와 관세감축

특별품목의 수		
합의된 지표와 관계없이 지정	합의된 지표에 기초해서 지정	계
총 세번의 8%	총 세번의 0~12%	총 세 번의 8~12%
특별품목의 관세감축		
지정된 특별품목의 5%는 관세감축의무 면제, 나머지에 대해 평균 15% 감축		

자료; 서진교, 전개서, pp.6

우리나라는 과거 협상에서 2005년에서 2014년까지 22만 5,575톤에서 40만 8,700톤까지 매년 MMA물량을 2만 347톤씩 증량하기로 했다. 2004년 쌀협상에서 각국이 행계획서에 식탁용 MMA를 규정하게 한 것이다.

〈표 6〉 용도별 최소시장접근 물량의 추이

단위: 천톤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체 MMA 규모	225.6	246.3	266.3	286.6	307.3	327.3	347.7	368	388.4	408.7
식탁용(%)	22.6 (10)	37.7 (15)	52.8 (20)	67.9 (24)	83.1 (27)	98.2 (30)	104.3 (30)	110.4 (30)	116.5 (30)	122.6 (30)
비식탁용(%)	203 (90)	208.2 (85)	213.5 (80)	218.7 (76)	223.9 (73)	229.1 (70)	243.4 (70)	257.6 (70)	271.8 (70)	286.1 (70)

자료: 농림수산부

3. 보조금의 방향

진행중인 DDA협상은 국내보조금을 감축보조(AMS), 최소허용보조(de minimis), 블루박스(Blue Box)로 규정하고 이들의 금액을 감축하면서 총액도 동시에 감축하고 개별 상한액이 주어지는 특징이 있다.

17) 수입금지됐던 상품의 시장을 개방할 때 일정기간동안 최소한의 개방폭을 규정한 것을 말한다.

쌀 등 농산물의 시장개방을 하면서 국내시장의 충격완화를 위해 전면적으로 개방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이 정도는 수입해야 한다는 개방정도의 허향폭을 말한다.

일단 협상이 마무리된다면 우리나라는 AMS 상한인 1조 4,900억원을 협상결과에 따라 개도국이면 30%, 선진국이면 45% 줄여야 한다. 이행기간은 선진국의 경우 5년, 개도국은 8년으로 되어있다. 최소허용보조의 경우 선진국은 최소허용보조의 기준을 50% 낮추기로 되어 있어 새로운 최소허용보조의 기준이 농업총생산액 또는 해당품목 생산액의 2%~2.5%가 된다. 개도국은 33.3%로 적용되어 새로운 최소허용보조의 기준이 농업총생산액 또는 해당 품목 생산액의 6%~6.7%이다. 최소허용보조 감축 이행기간은 선진국 5년, 개도국 8년이 주어져 있다. 현재 UR 협상에서 부여받은 개도국지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최소허용보조 감축기준이 농업총생산액 또는 해당품목 생산액의 10%인 상황에서 선진국이 되면 기존 10%에서 2%~2.5%로 낮아지고 개도국이 될 경우 6%~6.7%로 낮아져 어떤 지위를 새로 부여받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다. 블루박스는 과거 우리나라에서 시도해 보지 않았던 새로운 보조금이다. 선진국은 1995년에서 2000년 평균 농업총생산액의 2.5%가 블루박스 상한이며 품목별 상한은 블루박스 총액상한의 2.5%이다. 개도국은 1995년에서 2000년 혹은 1995년에서 2004년 평균 농업총생산액의 5%로 블루박스 상한이 되어 있으며 품목별 블루박스 상한은 블루박스 총액상한의 7.5%이다. 과거 UR 농업협정상의 블루박스와 달리 생산제한조치가 없어 새로운 보조금 지급방법이 되는 방편이 마련된 셈이다. 그러나 이경우는 AMS와 병존할 수는 없어 AMS를 통한 보조를 선택하든지 품목특정 블루박스이든지 선택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사용가능한 블루박스 총액한도는 선진국으로 인정될 경우 7,696억원 정도이고 개도국일 경우 1조 6,101억원이 될 전망이다. 따라서 품목별 상한은 선진국은 192억원, 개도국은 1,154억원이 된다.

4. 2008년 미농업법에 따른 DDA보조금 협상

2008년 농업법은 2002년 농업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농가소득을 보장하는 틀을 만들었고 과거와 달리 가격차이보전을 고집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의 농업보조금정책이 소득의 불안정성을 완화시키는 데 미흡하고 보조가 공평하게 분배되지 못하고 있으며, 증산유인 제공과 생산비를 증가시키고 WTO 규정과 불합치 하는 등 한계를 드러내고 있던 미국의 고민을 엿볼수 있다. 달라진 것은 기존보다 향후 5년간 370억 달러를 더 보조할 수 있게 한 것이다. 2008년 농업법은 '2008 식품, 보전, 에너지 법'이라는 이름으로 2012년까지의 한시적인 법이지만 향후에도 이법을 토대로 지속적인 법개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특징은 식량안보정책을 확대하고 자원을 보호하며 건전식품과 지역식품 네트워크의 증진과 소득보조정책, 바이오연료정책의 개혁이다. 또한 2002년 농업법의 테두리안에서 농가소득을 증진시키는 복안을 마련하여 농가로 하여금 선택의 여지를 주었다. 이복안은 품목별로 일정수입을 보장해 주는 수입보전직접지불¹⁸⁾(Average Crop Revenue Election, ACRE)을 도입을 말한다. 기존에 수행해 오던 마케팅론, 고정직접지불, 경기대응소득보조(Counter Cyclical Payment, CCP)

18) 2009년부터 실시예정이다.

를 시행하되 CCP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일부품목의 목표가격을 인상하여 CCP를 보완하고 있다.

〈표 8〉 수입보전직불제와 경기대응소득보조의 비교

구분	ACRE	CCP
수혜대상	모든 품목의 생산자	밀, 식량작물, 면화, 쌀, 유지류 생산자
지급기준	수입기준	가격기준
발동기준	2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발동 - 주단위 실제수입이 주단위 보장수입보다 적어야 함 - 농가실제수입이 농가보장수입보다 적어야 함 - 일정수준이상의 수입을 보장	- 목표가격을 정해놓고 유효가격(고 정직불금+시장가격 또는 융자단 가 중 높은 것)이 목표가격보다 낮을 때 발동 - 목표가격이상의 가격보장
특징	면적당 수입이 크게 변동되지 않아 안정적으로 농가의 수입을 지원 이 경우 직접지불금 20%와 유통지원융자의 30%를 포 기해야 함	- 실제 생산량과 연계되지 않아 농 업인의 소득이 불안정할 뿐 아니 라 시장가격이 급락하며 보조금 을 과다지급하고 시장가격이 상 승하면 보조금을 전혀 지불할 수 없어 정부의 예산수립에도 문제 가 발생

주단위 실제수입 ; 주단위 당해년 단수 * (연평균 국내가격과 융자단기의 70%중에서 높은 것)

주단위 목표수입 ; 90% * 주단위 기준단수(5개년 올림픽 평균단수) * 목표가격(2년 평균 국내가격)

농가목표수입 ; 농가별 기준 단수(5개년 올림픽 평균) * 목표가격(2년 평균 국내가격)

농가실제수입 ; 농가 당해년 단수 * (연평균 국내가격과 융자단기의 70% 중에서 높은 것)

자료 : 신유선, "DDA 2008년 6월 농업협상 및 미국 2008 농업법의 영향", 「KREI 세계농업」, 농촌경제연구원, 2008. 7.pp 6.

특히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을 위한 농업보호에 치중한 것이 국제협상의 진행과 관계없이 추진되었다는 점은 미국의 국제협상력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이는 각국이 보호무역정책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외에도 DDA협상의 연내타결이 과연 가능한 가도 우려되고 있다. DDA협상에서 보조금 축소를 논의하는 마당에 농가소득을 보전해주려는 미국의 정책은 협상에 장애로 작용할 것을 예상케 하는 동시에 이미 급등한 곡물가격으로 인해 소득이 높아진 농가를 지원하는 것을 보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식량외교를 걱정해야 하는 우리가 배워야 할 대목이다. 즉,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국내생산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곡물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농업대책이 시급하고 자급이 가능한 쌀 역시 예외가 아니다. 곡물수출국가의 적극적인 농가소득지원은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질좋은 농산물을 저렴하게 국제시장에 내놓아 시장점유율을 높여 궁극적으로 독점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5. OECD 권고안

OECD는 최근 2008년도 'OECD 국가 농정 모니터링 및 평가보고서' 및 '한국의 농정개혁평가보고서'를 내고 한국에는 농업인 보호 수준을 낮추고 개방을 통해 국내외 농산물 가격 차이를 줄이라고 조언했다. 또 FTA 확대와 DDA 협상 등을 통해 관세 체계를 조정해 지속적으로 농업시장을 개방하라고 권고했다. 'ECB 국가 농정 모니터링 및 평가보고서' 매년 각국정책을 검토하고 평가하고 있는데 국제적인 논의가 WTO에 상정되기 앞서 이루어지는 것을 미리 감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평가보고서에서 OECD는 국내 가격과 국제 가격 격차를 줄여야 하며 농업인 지원정책은 상품 생산과 직접 연계하지 말고 가능한 한 보상기간이 한정된 직접지불제(Direct Payment)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OECD 나름의 정책평가모형을 통해 우리나라의 생산자지지추정치¹⁹⁾가 여타 OECD 국가중 일본보다 높은 수치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2004년부터 2006년 추계치에 의하면 OECD 국가중 터키가 가장 높은 추정치를 보이고 두 번째가 우리나라로 되어있다. 우리나라는 97년부터 직접지불제를 도입해 ha당 일시불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오고 있으며 2005년부터는 논농업 고정·변동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고정직불제에 따라 농가에는 안정자금으로 논농업 ha당 70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매년 시중 쌀 가격과 연계해 농가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하는 변동직불제도 병행 적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OECD는 논농업 고정직불제는 정책 대상과 목표를 보다 명확히 하고 생산과 연계된 변동직불제는 재검토할 것을 조언했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괴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현재와 같은 농업, 비농업부문과의 갈등국면에서 직접적인 국제기구의 조언의 현실화는 쟁점만 키울 뿐이다. 한국농업의 구조조정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비교역적 측면에서 국제기구의 논의에 대항하는 논지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IV.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1. 관세감축

시나리오²⁰⁾. 선진국으로 지정되어 일반품목으로서의 관세감축

쌀은 개방될 경우 400% 내외의 관세가 예상되어 표1의 관세구간 75%를 상회하는 4구간 상품이다. 때문에 관세감축률은 66%~73%를 5년내에 감축해야 한다. 쌀시장 관세화이후 예상되는 관세는 100%

19) TSE는 GDP에서 정책으로 인해 농업부문에 지원되는 연간총지원금이다. 여기에는 연구개발비, 교육비, 검사, 마케팅, 프로모션등 일반서비스비용도 포함된다.

20) 시나리오는 필자가 우리나라에 가장 불리한 시나리오부터 가장 유리한 시나리오로 구성해 보았다.

에서 150% 사이가 될 것이다. 2008년 7월 현재 중단립종 국제시세가 톤당 1,000달러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수입이 되더라도 수입산 쌀에 비해 국내산 쌀은 가격경쟁력이 있다.

시나리오2. 선진국으로 지정되어 민감품목으로서의 관세감축

민감품목으로 지정되면 일반 관세 감축률의 1/3에서 2/3를 적용할 수 있다. 이행기간은 5년으로 최소한의 감축을 할 경우 22%에서 24% 감축할 수 있으며 쌀의 관세는 300% 가까운 관세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관세감축의 혜택은 고스란히 무관세쿼터(TRQ)로 보상해야 한다. 최소한의 관세감축의 경우라도 국내소비량의 4%에서 6%까지는 무관세로 수입해야 한다.

시나리오3. 개도국으로 지정되어 민감품목으로서의 관세감축

시나리오2와 다른 점은 최소한의 감축의 경우 15%에서 16%를 감축하고 이행기간도 8년이 되므로 시간적으로도 충분하고 관세는 개방시 큰 영향이 없다. 즉, 300%가 넘는 고관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TRQ 분량은 국내소비량의 2.7%에서 4%가 된다. 특이한 점은 개도국인 경우는 민감품목의 2/3까지 일반 감축률의 3/4을 적용하고 이행기간을 6년으로 하면 TRQ를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관세감축을 덜하는 대신 TRQ를 늘이든지 TRQ를 없애려면 이행기간을 줄이든지 선택의 여지를 준 것이다.

시나리오4. 개도국으로 지정되어 특별품목으로서의 관세감축

개도국이 될 경우 TRQ 종량없이도 평균 15% 관세감축이 가능한데 그동안 개도국의 식량안보, 생계유지, 농촌개발을 위해 합의된 품목으로 그동안 농산물 수출국과 팽팽한 의견대립을 보였던 항목이다. 특별품목은 감축률이 최소 12%에서 최대 20% 사이에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세 번의 0에서 40%까지는 관세감축의무에서 제외된다. 우리나라가 개도국을 유지하고 쌀이 특별품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면 관세를 전혀 인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여러 학자들이 갑론을박하는 쟁점이 등장한다. 관세화유예가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이다.²¹⁾ 관세유예 기간(2005년~2014년)중 최소시장접근물량이 기준년도(1986~1988년) 평균 소비량의 8%까지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 2015년 이전에 관세화한다면 전환시점의 최소시장접근물량과 DDA 협상결과에 따른 TRQ를 비교, 높은 수치를 적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2004년 협상에서 논란끝에 관세화유예를 추진했던 것은 정치적인 이유에서이고 급증할 듯 싶은 쌀 수입을 연기하기 위해서였다. 관세화를 늦게 할수록 최소시장접근물량이 TRQ를 상회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조기관세화논의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현재로서는 관세화를 유예해야만 했던 중요한 이유인 국내외 쌀가격차가 그리 크지 않아 수입시장을 완전개방 하더라도 국내쌀이 충분히 가격과 품질면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다.²²⁾ 아래 표에서 보듯이 관세화이후에 추가

21) 김명환의 1인, 쌀관세화유예를 계속할 것인가?, GS&J Institute, 2007.9.

22) 2005년 이후 수입쌀을 시판한 결과 국내쌀보다 소비자의 선호도가 현저히 낮아 가격차가 30%가 벌어져 있다고 한다.

로 늘어나게 되는 쌀 수입가격은 2008년 7월의 1,000달러 이상인 국제가격과 비교해 볼 때 현저히 낮아 쌀시장개방의 우려를 덜어주고 있다.

〈표 7〉 관세화에 의한 수입이 발생하는 쌀 수입가격

단위 : 달러

시나리오	선진국		개도국	
	민감품목적용	민감품목비적용	특별품목적용	특별품목비적용
임계국제가격	350	620	290	420

자료: 김명환 외 1인, “쌀관세화유예를 계속할 것인가?”, GS&J Institute, 2007.9. pp.8

2. 보조금 시나리오

시나리오 1) AMS 감축

UR 협상결과인 우리나라의 지급가능한 보조금은 1조 4,900억원이다. 이번 협상에서 개도국이 되면 이중 30%, 선진국이라면 45%를 감축해야 한다. 쌀의 보조금은 AMS로 할 경우 상당한 감축을 예상해야 한다. 현재 이에 해당되는 쌀관련 보조금은 FTA 보완대책에 따른 보조금과 변동직불금이다.

시나리오 2) 최소허용보조 감축

선진국은 최소허용보조기준을 50%~60% 낮추어야 하는데 이에 따르면 최소허용보조기준이 농업총생산액 또는 해당 품목 생산액의 2%~2.5%가 된다. 개도국은 선진국의 2/3만 감축하면 되기 때문에 농업총생산액 또는 해당 품목 생산액의 6%~6.7%가 된다. 우리나라는 과거 UR 협상당시 개도국지위를 인정받아 최소허용보조 감축 기준이 농업총생산액, 또는 해당 품목 생산액의 10%였다. WTO에 협정위반으로 제소 당할 때 제소기준이 되기도 했었다.²³⁾ 이 기준이 새로운 협상에서는 6%~6.7%로 낮아지고 선진국이 될 경우는 2%~2.5%가 되어 이행부담이 높아진다. 그러나 선진국이 되는 경우에도 최악의 경우는 품목별특정의 경우 보조금상한은 6,156억원(2%)이고 개도국이 되면 3조 2,201억원(10%)이다. 과거의 실적으로 보면 최소허용보조 실제 사용액이 1995년 2,822억원, 2004년 7,836억원²⁴⁾으로 선진국이 되고 최악의 보조금상한이 결정되더라도 큰 무리는 없어 보인다. 우리나라는 경영이양직불금, 친환경농업직불금, 고정직불금이 이에 해당된다.

김명환, 전계서.

23) 보조금문제로 제소당했으나 한국이 이긴 예로서 쇠고기협상 사례가 있다.

김은영, WTO 쇠고기협상에서 드러난 GATT 1994 해석과 의의, 2002. 5.

24) 서진교외, DDA 협상의 전개과정과 다자통상체제에 대한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12

시나리오 3) 블루박스 사용

선진국은 1995년에서 2000년 평균 농업총생산액의 2.5%를 블루박스 총액 상한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품목별 상한은 1995년에서 2000년 사이의 평균 실제 블루박스 지급액 또는 블루박스 총액상한의 2.5%로 설정가능하다. 개도국의 경우는 1995년에서 2000년 또는 1995년에서 2004년 사이의 평균 농업 총생산액의 5%로 블루박스 총액 상한이 정해져 있고 품목별 블루박스 상한은 블루박스총액상한의 7.5%로 설정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사용해 본 경험이 전무한 보조금으로 생산제한 조치가 없는 보조금이라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는 보조금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새로운 보조금을 사용하려면 기존 해당 품목에 대한 AMS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쌀의 경우는 기존 FTA 관련 보조금과 변동직불금을 블루박스로 전환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쌀을 적용시킬 경우 해당품목의 품목별 생산액은 1,154억원으로 2008년도의 AMS로 보조할 수 있는 금액인 5,330억원을 훨씬 밑돌고 있다. 향후 보조금을 점진적으로 줄인다 하더라도 협저한 격차 때문에 블루박스로 쌀관련 보조금을 대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 진다.

V. 결 론

쌀의 경우 시장개방을 할 경우 민간품목으로 지정하고 TRQ 증량을 하든지 특별품목으로 지정하고 AMS로 보조금 상한을 정하든지 블루박스로 전환하는 것도 생각해 볼 때다. 앞서 보았듯이 우리는 선진국으로 인정되거나 개도국이 되는 이해득실을 따져보았다. 이제는 개도국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모두가 최대한의 역량을 기울일 때다.

그러나 한편 국제 쌀 시장에서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가격 상승추세 또한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수출국의 수급 및 수출정책 동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상하여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다행히 우리나라 국내 쌀 시장에는 국제 시장가격 폭등의 영향이 심각하게 미치지 않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쌀을 원료로 하는 제조업체들의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제품의 가격상승은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식량안보와 국내 쌀 시장의 안정을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허용보조로 분류되는 공공비축제²⁵⁾를 효율적으로 활용함으

25) 2005년부터 쌀을 시장가격으로 매입, 판매하고 있는 공공비축제는 우리나라 식량안보 기능을 맡고 있으며, 초기 목표 가격은 17만 70원이었다. 쌀값이 급락해도 가마당 16만5000원 이상을 보장해 주는 제도로 쌀 농가의 소득보전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WTO의 허용보조요건 총족기준(WTO농업협정 부속서2의 감축약속 면제기준)을 보면
 - 정부의 공공재정계획에 의해 제공되는 것이어야 하며 소비자로부터 전가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 생산자에 대한 가격지지효과가 없어야 한다.
 - 재고유지량은 식량안보를 위해 사전에 결정된 목표량과 일치되어야 한다.
 - 매입은 현행 시장가격에 의해야 하고 판매는 시장가격보다 낮지 않아야 한다.

로써 국민이 필요로 하는 품질의 쌀을 적정 가격에 공급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쌀 자급을 유지하여 세계적인 식량위기가 닥쳐도 흔들림 없는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통일을 포함한 예상되는 쌀수요에 대비하여 농경지의 산업용 지화 지연, 기반시설정비와 유통구조개선이 포함된다. 또한 쌀과 그 외의 주곡들의 자급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최근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논의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는데 식량수출국의 수출이 중단될 경우, 혹은 곡물가격폭등에 대비하여 일본의 예²⁶⁾를 따라 해외농업진출이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식량자급률 목표수준 법제화도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 주식용자급률등 식량 자급률 목표치 달성을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장기적 안목으로 식량안보시대를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국제기구에서의 식량안보논의는 법적인 새로운 장치, 예를 들어 식량안보Box를 탄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국제기구의 논의를 주시하면서 국내생산기반의 유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계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2008년 상반기의 DDA 협상은 DDA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분류되고, 쌀이 민감품목으로 지정되지 못할 경우 통관가격은 국내산보다 훨씬 낮은 11만4,350원이 될 것으로 추정됐지만, 이렇게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선진국도 전체 품목의 4~6%를 민감품목으로 선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쌀이 민감품목 또는 특별품목으로 지정되면 국제 쌀가격이 400달러 수준으로 떨어지더라도 수입 쌀 통관가격이 국내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²⁷⁾ 향후 예상되는 개최되는 다자협상에서 우리의 주요 관심사항인 특별품목 및 민감품목 등을 중심으로 G10(수입국 그룹), G33(수입개도국이면서 특별품목 및 특별긴급수입제한제도를 중시하는 그룹) 등 이해관계가 유사한 국가들과 공동하여 적극 대응하며 최근 쇠고기협상의 교훈²⁸⁾도 참조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쌀시장개방으로 WTO 뿐만 아니라 여타 국제기구에서의 논의에 대한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대내적으로 쌀부족사태에 대비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점검을 제도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참 고 문 헌

김명환외 1인, “쌀관세화유예를 계속할 것인가?”, GS&J Institute, 2007.9.

김은영, “한국쌀산업의 보호비용과 정책적 과제”, 통상정보연구, 2003.

_____, “WTO 쇠고기협상에서 드러난 GATT 1994 해석과 의의”, 국제상학, 2002. 5.

26) 일본의 해외 농업개발 현황을 보면 해외식량기지로서 브라질, 러시아 등지의 해외 농장을 지분참여 형태로 일본 국내 경지면적의 3배에 육박하는 1,200만ha 확보한바 있으며 곡물유통분야에서도 미쓰비시, 미쓰이 등 대형 종합상사들은 60년대부터 농업유통 시설을 매입하는 등 곡물매이저로 활동해 왔다.

27) 박동규외 3인, “중장기 쌀 수급방안”, 농촌경제연구원, 2007.11.

28) 국내의 의견조율이 쌀협상때보다 걸끄러워 속전속결의 협상이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기 어려움을 체험했다. 농업부문과 기타부문과의 잠재된 사회갈등이 쇠고기를 통해 노출된 면도 있다.

- 김정호 외, 「WTO 체제하의 쌀산업 정책의 평가와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11.
- 농림수산부, 「농업협상추진동향」, 2008.6.
- 박동규외 3인, “중장기 쌀 수급방안”, 농촌경제연구원, 2007.11.
- 박미옥, “무역의존도의 올바른 이해”, 농협경제연구소, 2007.1.
- 박성재, “119조 농림투용자사업 평가”, 농정 추진상황 점검 및 119조 투용자사업 평가 토론회 자료, 농특위, 2006.4.
- 사공용, “공급량 변화에 따른 쌀 가격변화의 계측”, 「농업경제연 제47권 제4호」, 2006.
- 서진교, DDA 농업협상, “우리농업의 미래설계도를 요구하고 있다”. GS&J Institute, 2008. 7 pp.3
- 성진근, “한국농업최고경영자과정 교육의 발전과제”, 강원대학교 농촌사회교육원, 2004.8. pp.9.
- 신유선, “DDA 2008년 6월 농업협상 및 미국 2008 농업법의 영향”, 「KREI 세계농업」, 농촌경제연구원, 2008. 7. pp. 6.
- 조재호, “최근 식량인플레이션의 원인과 대응방향”, 「세계 식품과 농업 3월호」, 2008.3. 성진근, “한국농업최고경영자과정 교육의 발전과제”, 강원대학교 농촌사회교육원, 2004. 8. pp.9.
- 통계청 통계데이터 (www.kosis.kr)
- FAO, Crop Prospects and Food Situation, 2008.4.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8.4.
- OECD, Evaluation of Agricultural Reforms in Korea, 2008.3.
-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2008.1.
- _____, Grain : World Markets and Trade, 2008.1.
- _____, Agricultural Outlook, 2008.2.
- _____, Rice Outlook, 2008.4.